

충청북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(안)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1년 12월 23일

나. 회부일자 : 1991년 12월 23일

3. 제안이유

○ 광역소방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 체제를 정비,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 소방서 설치 시의 조례와 군 지역 조례을 통합 충청북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가. 2원화된 조례 단일화

○ 시(소방서)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통합 → 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제정

나. 의용소방대 설치권자조정(제2조)

○ 시장·군수 → 도지사

다. 의용소방대 명칭 변경(제3조)

○ 소방서 관할구역 의용소방대는

— ○○소방서 의용소방대를 → ○○소방서 의용소방대, ○○○소방서

○○읍·면의용소방대

○ 소방서 미관할구역 의용소방대는

— ○○읍·면의용소방대를 → ○○군 ○○읍·면의용소방대

라. 임용기준 추가(제5조)

○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자 중 지원하는자를

→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자 중 지원하는 주민으로 다음사항 고려 임용

- 관할구역내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민

-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민

- 신망이 두터우며 의용봉공 정신이 강한 주민

마. 의용소방대장, 부녀의용소방대장 지휘·감독체계 조정(제7조)

○ 소방서장, 읍·면장을 → 소방서장, 군수로 조정

바. 임용권자 조정(제10조)

○ 의용소방대장, 부대장, 부녀대장, 부녀부대장, 지역대장을 소방서장, 읍

· 면장 추천 시장·군수임용 → 소방서장, 군수, 추천 도지사 임용

○ 대원 : 의용소방대원 추천 소방서장, 읍·면장 경우 시장 군수 임용

→ 의용소방대장 추천 소방서장 군수 임용

사. 의용소방대 점열 강화(제20조)

○ 연1회 → 연2회

아. 의용소방대의 경비

○ 기본경비 : 시·군예산 → 도 예산에 편성

○ 활동비 보조 등 신설(제24조)

- 의용소방대 관련업무 수행 필요경비 : 소방서장·군수

○ 시·군 행정에 필요한 지역활동 수행 필요경비 : 시장·군수

자. 재해보상 청구 지급(제30조)

○ 소방서장, 읍·면장 경우 시장·군수 → 의용소방대장 경우 소방서장

· 군수

차. 의용소방대 연합회 규정 신설(제31조)

○ 도 연합회 : 시·군행정구역단위 의용소방대 대표로 구성

○ 시·군 연합회 : 관할행정구역내 각 대장으로 구성

카. 의용소방대 연합회 경비지원 규정 신설(제33조)

- 도 연합회 및 시·군 연합회 : 도지사
 - 시·군 연합회 지역활동 필요경비 : 시장·군수
- 타. 관할구역내 업무지원 규정 신설(제34조)
- 시장, 군수의 의용소방대 지원요청시 소방서장(의소대장) 적극 참여, 지원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안을 검토한바

- 가. 소방법 (법률 제4419호)이 1991. 12. 14자로 개정 공포되면서 지방자치 단체의 소방업무 수행책임이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·군에서 도지사로 조정되는 등 소방행정체계가 광역소방행정체계로 전환되면서 나. 종전 시·군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되었던 의용소방대의 조직이 개정 소방법 제 86조의 규정에 의거 시·도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설치, 명칭, 정원, 임면, 복제, 복무 및 운영예산 지원등 의용소방대 관리업무 전반을 도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음.
- 다. 따라서 의용소방대의 설치운영을 광역소방행정 체제에 부합되도록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, 의용소방대 업무 전반을 도지사가 조정 통제 및 지휘·감독하되, 의용소방대의 설치운영권을 소방서 관할구역은 소방서장이,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관할 군수가 관장토록 하였으며
- 라. 임용권의 행사는 대장급등 지휘관의 임용은 도지사가, 부장급 이하 대원은 소방서장 또는 군수가 임용토록하여 소방서장과 군수의 지휘권 확립을 도모하고, 의용소방대연합회 구성 근거를 규정하는 등
- 의용소방대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대원이 소속감을 가지고 지역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으로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안을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(참 고)